

日本의

特許管理 教育考察(6)



安鍾喆
(特許廳指導課事務官)

目 次

- I -1 工業所有權制度의 基礎知識
 - 1. 特許制度의 基礎知識
 - 2. 實用新案制度의 基礎知識
 - 3. 意匠制度의 基礎知識
 - 4. 商標制度의 基礎知識
 - 5. 特許權等의 保護 對象
 - 6. 特許廳에 있어서의 審查節次
 - 7. 審判制度의 基礎知識
 - 8. 権利의 發生에서 消滅 까지
 - 9. 特許權者 의 義務
 -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查節次
 -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있어서 早期審理의 節次等
- 12. 法改正 動向

- I -2 國際出願의 活用
 - 1. PCT의 概要
 - 2. PCT의 意義
 - 3. PCT 締約國一覽
 - 4. 在來 절차와 PCT 절차와의 比較
 -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 6. FAX를 利用한 國際出願의 提出
 -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12. 法改正 動向

「特許法等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昭和62年法律第27號)〈昭和62年5月25日公布〉

이 法律은 制度의 國際化·近代化의 一環으로서 多項制의 改善과 特許權存續期間廷長制度의 新設을 中心으로 한 것이다.

1) 多項制의 改善

(1) 特許請求의 範圍를 請求項形式으로 쓰는 것으로 되었다 (特36條, 昭和63年1月1日施行)

① 請求項에는 特許를 받고자하는 發明의

必須構成要件만을 적는다.

② 하나의發明에 대하여多面的으로自由로운表現에 의한複數의請求項이記載될수 있다.

i) 從屬形式의 使用을 強制하고 있던 實施態樣項의 規定이 없어졌다.

ii) 同一發明으로 된 것중에 포함된 레벨이 다른發明도請求項形式으로自由로이記載할 수 있다.

(2) 2以上의發明을 하나의願書로出願할 수 있는併合要件이大幅 확되 되었다. (特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3) 2以上의請求項에 관계된 特許 無效審判은請求項마다請求할 수 있다. (特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4) 實用新案의 경우에도 대체로 같다. 다만, 方法의 考案을 認定치 않는 實用新案의 性格上 하나의願書로出願할 수 있는 2以上의考案은同一 카테고리의 것에 한한다.

(實5條, 6條, 37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2) 制度의 國際的調和를 위한 節次期間의彈力化等

(1) 파리條約의 優先權을 主張하는 特許出願인의證明書提出期限이「優先日로부터 1年 4月以内」로 되었다. 改正前에는出願日로부터 3月以内였다. (特43條, 昭和62年 6月1日施行)

(2) 特許異議申請期間이出願公告日로부터 3月以内로 되었다. 改正前에는 2月以内였다. (特55條, 昭和63年 1月1日施行)

(3) 特許異議申請期間이出願公告日로부터 5年(實用新案은 3年)이 경과하면外國에頒布된刊行物을理由로 할 수 없다는 規定(除斥期間)이廢止되었다. (特124條, 削除, 昭和62年 6月1日施行)

(4) 外國語로 된 PCT出願으로優先日로부터 1年 7月以内에國際豫備審查請求를 하고 日本을選擇國으로 한 것은翻譯文의 提出期間이優先日로부터 2年 6月以内로 되었다. 改正前에는 1年 8月以内였다. (特184條의 4, 昭和62年 12月8日施行)

(5) 實用新案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일하다.

(實9條, 13條, 38條削除, 實48條의 4)

(6) 意匠法에서는 (3)項에 관해서만이同一하다. (意49條削除, 昭和62年6月1日)

3) 特許權在續期間廷長制度의 新設

이制度는所定의條件을 만족시키는 醫藥, 農業關聯特許發明에 대해서만適用된다. 따라서他分野의特許權者에게는關係가없는제도이다.

위에서 말한特許發明을 實施하는 것이藥事法이나農藥取締法등이定하는 바에따라試驗이나審查를 위해登錄後 2年以上司能하지 않았던경우에 5年을限度로그存續期間의延長이認定되는制度이다. 存續期間滿了前 6月까지所定의廷長登錄出願이必要하며審查를 받게된다. (特67條, 67條의 2, 昭和63年1月1日施行)

4) 手數料等의改正

特許料(實用新案登錄料), 審查請求料, 審判, 再審請求料등의手數料가昭和62年6月1日과昭和63年1月1日로나뉘어施行되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1) 昭和63年1月1日以後의出願에대해서는請求項形式으로되고, 特許料등의算出基礎도徒來의「發明의數」로부터「請求項의數」로변경되므로해서두갈래로나뉘어운영된다.

(2) 昭和62年12月31日以前의特許, 實用新案出願과意區, 商標에대해서는昭和62年6月1日부터施行되는것이適用된다. (特107條, 實31條, 意42條, 商40條 및 特195條, 實54條, 意67條, 商76條)

5) 審判請求의取下

審判請求는審決確定前에는언제라도取下할수있게되었다. 改正前에는審理의終結通知가있은後에는取下할수없었다. (特155條, 實41條, 意52條, 商56條昭和62年6月1日施行)

I-2 國際出願의活用

特許協力條約(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 PCT의 概要

PCT는 外國出願의 容易化, 同一 發明에 대해서 多數國에 出願하는 경우에 出願人 및 各國特許廳의 努力 및 費用의 輕減을 도모할 目的으로 1970年에 採擇된 條約으로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以來의 획기적인 것이다.

이 條約은

- (1) 國際出願制度에 關한 實體規定
- (2) 條約의 運用에 關한 管理規定 및
- (3) 最終條項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中最主要한 部分은 (1)에 있으며 이곳에서 定하고 있는 節次는 國際出願, 國際調查 및 國際豫備審查의 3段階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國際出願 및 國際調查에 關한 節次(第1章)는 全部 國際出願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이다. 國際豫備審查에 關한 節次(第2章)는 出願人の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任意的 節次이다. 各 締約國은 이 國際豫備審查에 關한 절차를 定하고 있는 第2章에 대해 留保할 수도 있다.(第64條(1))

또한 PCT는 國際出願의 節次面에 대해서만 規定하고 있고 國際出願된 發明이 各國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實體的 要件은 各國의 國內法令에 근거한 판단에 맡기고 있다.

2. PCT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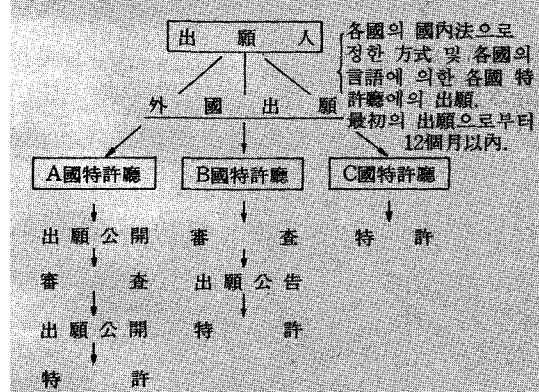
PCT加盟에 의해 外國에의 出願이 容易하게 되고 外國에 있어서 特許權의 取得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동시에 國際間의 技術交流를 促進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資源이 빈곤한 나라가 今後로 技術立國, 貿易立國으로서 技術輸出이나 플랜트類로 代表되는 高度한 技術集的商品의 輸出을 擴大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매우 有益한 條約이다. 또한 PCT는 特許分野에 있어서 開發途上國 援助를 行하는 것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点에 있어서도 意義가 깊은 條約이다.

3. PCT締約國一覽(1989年 1月 現在 41個國)

地 域	國 名	地 域	國 名
아메리카	바르바도스, 브라질, 美國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日本, 스리랑 카, 호주, 대한민국, 북한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 스 리히텐스 타인, 서독, 덴마크, 필란 드, 프랑스, 영국, 평가 리, 이탈리 아, 롤렘부르 그, 모나코 네덜란드,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챠드, 콩고, 가봉, 세네 갈, 토고, 마다가스카 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 니아, 수단, 베니, 부르키 나훼소	유럽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소 련, 불가리아
아프리카			

4. 在來節次와 PCT節次의 比較

(1) 在來의 節次



6. FAX를 이용한 國際出願의 提出

特許協力條約에 따른 國際出願은 팩시밀리(FAX) 장치에 의해 提出할 수도 있다.

(1) 팩시밀리番號

(東京03)501-6803

(2) 接受時間

① 月曜日~金曜日 09:00~17:00

② 土曜日 09:00~12:00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A. 國際出願手數料

(1)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特許印紙로 納付함, a와 b가 있음)

a. 送付手數料 - 國際出願1件마다

16,000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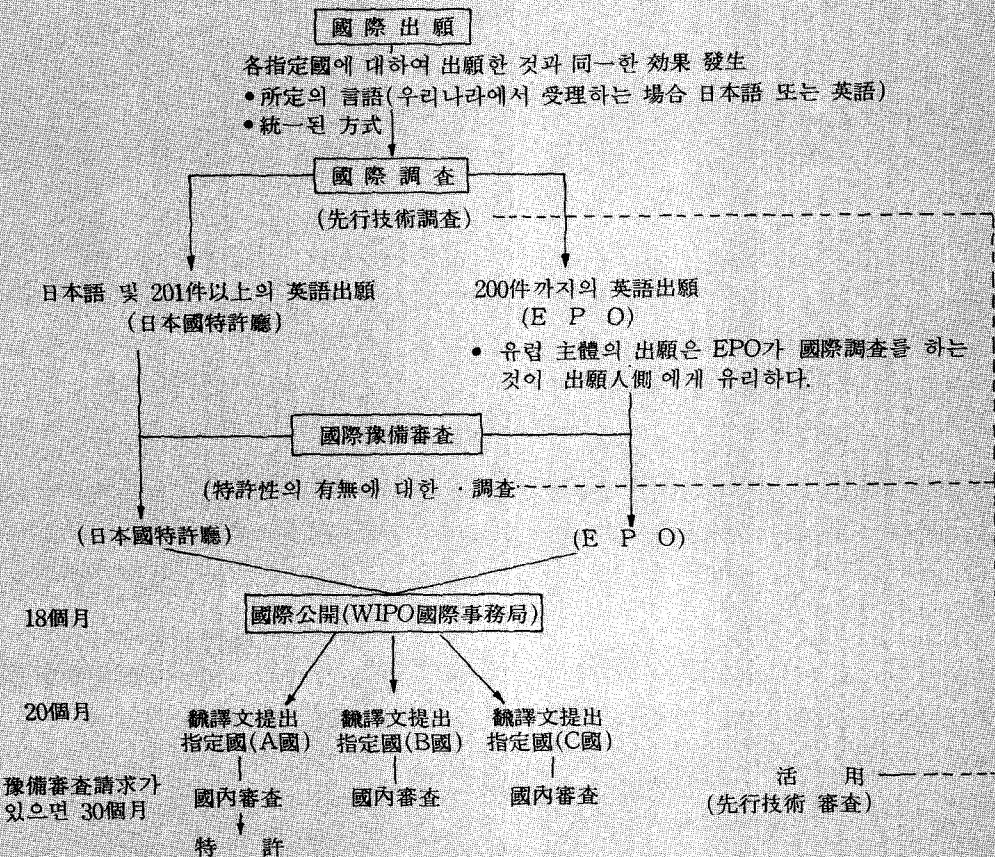
b. 調査手數料 - 國際出願1件마다

54,000円)

(但, 유럽特許廳에 의한 國際調査等을
받고자 하는 國際出願에 대해서는 下記의
(3)을 參照할 것.)

(2)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
(國際手數料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國際事務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처리



局의 銀行口座로 송금한다. a와 b가 있음)

a. 基本手數料

(i) 國際出願의 用紙枚數가 30枚以內의 경우 : 64,300円

(ii) 國際出願의 用紙枚數가 30枚를 超過하는 경우 : 64,300円에 30枚을 超過하는 用紙1枚마다 1,300円을 加算한 金額

b. 指定手數料

1指定國(群)마다 15,600円

最高限度額 156,000円

(10을 초과하는 指定國(群)에 대해서는 不用)

(3) 유럽特許廳에 納付하는 調査手數料
日本 特許廳은 受理官廳으로 하는 英語로 된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上記 A-(1)-b에 記載된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調査手數料에 대신하여 유럽特許廳에 納付해야 할 調査手數料 171,100円을 EPO / JP-WIPO 名義의 銀行口座로 송금한다.

B. 國際豫備審查手數料

(1)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 (特許EP紙로 納付함)

予象備審查手數料 : 國際予備審查請求1件마다 20,000円

(2)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納付하는 手數料 (取扱手數料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國際事務局의 銀行口座에 송금함)

取扱手數料 : 1件마다 19,700円에 國際豫備審查報의 韓譯文作成을 필요로 하는 選譯國의 各 言語마다 19,700円을 加算한 金額.

C. 手數料에 關係하는 其他 事項

(1) 銀行口座

a. 國際事務局의 銀行口座

• 口座의 所在地

(株) 東京銀行 內幸町支店

東京都千代田區內幸町2丁目1番1號 飯野Bldg. 內)

電話番號 (03)506-3856

• 口座의 名義 : WIPO-PCT, Geneva

• 口座의 種類 : 非居住者円普通預金

• 口座番號 : 0473286

b. 유럽특허청에 納付해야 할 調査手數料의 銀行口座

• 口座의 所在地

(株) 東京銀行 內幸町支店

東京都千代田區 內幸町1番1號

飯野Bldg. 內

• 口座의 名義 : EPO / JP-WIPO

• 口座의 種類 : 非居住者円普通預金

• 口座番號 : 0862711

(2) 其他

國際出願關係의 手數料에 대해서는 이 外에 國際出願이나 國際豫備審查의 追加手數料, 各種 手數料의 納付時期, 國際事務局의 銀行口座로의 송금을 증명하는 書面의 提出等 여러가지 規定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下記의 國際出願室로 問議바람.

特許廳審查第1部 出願第1課 國際出願室
電話(代表)501-1511(交)4014

(直通)501-6803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1) 提出期間

優先日로부터 16個月以內 (但, 條約 第23條(2)에 規定하는 경우에는 處理 또는 審查가 請求된 때까지

(2) 提出處

受理官廳(日本國特許廳) 또는 國際事務局

(3) 提出方法

日本國特許廳에 對하여 節次를 밟는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方法에 의해 행해진다. 다만 (2)의 경우에는 先出願이 日本 特許廳에 對하여 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한한다.

덧붙여 國際事務局에 對하여 節次를 하는 경우에는 「第14節, 國際事務局에 對한 節次」를 參照바람.

① 優先權證明書를 添附한 「優先權書類提出書」를 提出한다.

② 先出願의 寫本(先出願 1件마다 正副各1通)과 「優先權證明願」(先出願 1件마다 1通)을 添付한 「優先權書類送付請求書」를 提出한다. ♣